

로스앤젤레스한인회 선거관리규정

제 1 조[목적]

- 1) 본 규정은 한인동포사회의 대표이며 리더인 한인회장 선출에 균등한 기회를 열어주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통해 직접선거제도로 한인회장을 선출하는데 목적을 둔다.
- 2) 선거에서 발생될 수 있는 혼잡과 혼탁선거를 예방하고, 소모적이고 퇴폐적인 선거풍토가 조성되지 않도록 하여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관리, 운영한다.

제 2 조[선관위 구성 및 임무]

- 1) 선거관리 위원은 7인 이내로 한다.
- 2) 선거관리위원 3인은 한인회 임원, 이사 중에서, 한인회 회장이 추천하여 정관 제 6 장 2 조에 따른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다.
- 3) 선거관리위원 4인은 한인단체 중에서 추천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한인회장이 임명한다.
- 4) 선거관리 위원회는 선거일 45일 전까지 구성하고, 구성과 동시에 직무가 시작되며 당선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체한다.
- 5) 선거관리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장과 다음부서를 선출하며, 필요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 조정할 수 있다.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재무 2인, 감사 2인, 홍보 1인, 사무국장.
 - a.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 b. 재무위원 2인은 선거와 관련된 모든 회계의 출납을 담당한다.
 - c. 감사 2인은 선거기간동안, 그리고 선거가 끝난 후 모든 서류에 대한 감사를 10일 이내에 실시하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d. 홍보위원은 선거 및 후보자와 관련된 대외홍보업무를 담당한다.
- 7) 선관위의 결정으로 소정의 사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무국장을 제외한 선관위원 및 상기 인사 전원은 무보수 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 8)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 각 개인은 중립의 원칙을 지킨다.

- 9) 제 37 대 한인회장 선거관련 주요일정은 아래와 같다.
- a. 후보자등록서류배부일 : 2024 년 10 월 23 일(수)~25 일(금),
오전 10 시~오후 2 시
 - b. 유권자등록기간 : 2024 년 10 월 28 일(월)~12 월 2 일(월), 약 35 일
 - c. 후보자등록일 : 2024 년 11 월 6 일(수), 오전 10 시~오후 5 시
 - d. 후보자서류보완일 : 2024 년 11 월 7 일(목)~ 8 일(금)
오전 10 시~오후 2 시
 - e. 후보자기호추첨일 : 2024 년 11 월 12 일(화), 오전 10 시
 - f. 우편투표용지 발송일 : 2024 년 11 월 15 일(금)부터
 - g. 참관인등록일 : 2024 년 12 월 2 일(월), 오후 2 시
 - h. 선거일 : 2024 년 12 월 7 일(토), 오전 9 시~오후 7 시 마감

9) 상기 2 조 8 항을 위반시에는 정관 제 6 장 1 조 3 항에 따라 한인회는 임시이사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선관위원의 규정위반인 경우 해당위원의 소명을 거쳐 정관 제 6 장 2 조의 일반의결 원칙에 따라 제명처리하며, 상기 제 2 조 2 항과 3 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규정위반의 주체가 선관위원회인 경우는 선관위원장의 소명을 거쳐 한인회 이사회의 성원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관위를 해체할 수 있으며, 원만한 선거진행을 위해 본 선거관리 규정제 2 조 2 항과 3 항에 따라 즉각적 재구성을 할 수 있다.

제 3 조 [선거 사무국]

- 1) 선관위는 원활한 선거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인회내에 사무국을 설치,운영한다.
- 2) 선관위는 선거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원 또는 특정 전문업체를 고용할 수 있다.
- 3) 선관위 사무국장은 선관위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선관위원장의 지시를 준수한다.

제 4 조 [입후보자 자격]

- 1) 입후보자의 자격은 로스앤젤레한인회 정회원으로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미국 및 한국의 관련법규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형 선고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여야 한다.
- 2) 또한 후보등록시작일 기준 10 년 내 본 한인회는 물론 미국 캘리포니아주 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에서 이사, 임원, 회장 등으로 재직하던 중 자격박탈, 제명퇴출, 직무정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로 한다.

- 3) 입후보자는 위의 자격요건외에 후보등록시작일 기준 10년 이상 Los Angeles 카운티에 거주한 자이어야 하며,
- a) 최근 10년내 본 한인회 이사 또는 임원으로 2년 이상 봉사한 자로 한다, 또는
 - b) 미국 캘리포니아주 내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활동 근거지를 둔 단체에서 후보등록시작일 기준 최근 7년내 3년 이상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장, 부이사장)으로 봉사활동 한 자로 한다.
위의 비영리단체라 함은 후보등록시작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캘리포니아주 비영리단체법에서 규정한 절차들을 준수 했어야 하며, IRS 에 Required Annual Filing(990 or 990 Ez)절차를 제대로 마친 결과, 하자가 없는 단체에 한한다.
 - c) 본회 관할지역인 LA 카운티 내에서 한인회의 명칭을 사용하는 타 단체에서 임원, 이사, 고문 및 위원장등 어떠한 직책이라도 맡은 적이 없는 자로 한다.
- 4) 성범죄(성폭행, 성추행등), 마약범죄,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윤리에 반하는 범죄경력자, 한인사회 공익에 반하는 단체 가담자, 그리고 조직에 심각한 분란의 원인제공자 또는 법적소송의 원인제공자는 아니어야 한다.

제 5 조[후보 등록 절차]

- 1) 선거를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혼탁선거를 예방하기 위해,
입후보예정자는 서류배부기간 동안 입후보서류를 수령할시 Cashier's Check \$5,000 을 납부해야 하며, 해당 금액은 입후보자의 후보 등록시 회장후보등록비로 포함된다.
단, 입후보자에정자가 후보등록기간 내 후보등록을 위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금액은 반환되지 않는다.
- 2) 입후보예정자는 아래에 열거된 서류와 소정의 금액을 후보등록일에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제출된 서류의 확인을 위해 사실관계를 조회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벌칙사항에 저촉된다.
- 2) 입후보예정자는 선관위가 정한 후보등록 첫날 오후 5 시까지 반드시 모든 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하여, 등록여부를 심사 받아야 한다.
- 3) 선관위는 24 시간 내에 제출된 제반서류를 검토하여 하자여부를 판단, 후보등록절차의 완료 혹은, 불충분으로 등록기한내 다시 제출할 것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며, 이경우 제출된 서류일체를 즉각 반환한다.
- 4) 등록기한 이후의 제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 1) KAFLA F1-1/ F1-2 :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 2) KAFLA F2 : 입후보자 이력서(한/영)
- 3) KAFLA F3 : 입후보자 한글 서약서

- 4) KAFLA F4 : 입후보자 영문 서약서
- 5) KAFLA F5 : 선거 대책 본부 구성 보고서
- 6) KAFLA F6 : 입후보자 신원조회동의서
- 7) 입후보자 거주 신분증명서 사본 (영주권 혹은 미국 여권)
- 8) 입후보자 또는 배우자(입후보자와의 관계증명서 첨부)의 최근 10년 이상 Los Angeles County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틸리티 Bill 또는 DMV 서류, 자동차보험, 주택화재보험, 주택 Loan 서류 등) 원본 혹은 사본,
- 9) 10 인의 추천서 동봉 (신분증 사본 포함) 단, 정회원에 한한다.
- 10) 입후보자 상반신 사진 3매 (칼라 3.5" x 4.5")
- 11) 전, 현 한인회의 이사나 임원으로 선거일 기준 최근 10년내 2년 이상이거나, 미국 캘리포니아 주내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활동근거지를 둔 단체에서 최근 7년내 3년 이상 임원(회장,부회장, 이사장,부이사장)으로 봉사 활동한 소속단체장의 확인서, 소속단체의 비영리 단체 주정부 등록서류, 비영리단체 증명서, 단체 최근 3년 IRS 세금보고
- 13) 회장입후보 등록비 \$45,000(Cashier's Check Only), 단, 후보등록마감결과 2인이상 등록하는 경우, 선거비용 8만불(Cashier's Check Only)이 추가되며, 후보등록마감 익일(다음날) 오후 2시까지 납부하여야 후보자격을 인정한다.
- 14) 입후보 예정 당사자에 한해 등록서류를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자 본인에 한해 등록서류를 접수한다.

2) 입후보등록금 내역 및 사용

- 1) 입후보자는 입후보등록비 \$50,000 과 후보등록 마감결과 2인이상 등록한 경우에 추가되는 선거비용 \$80,000 을 상기 제 5 조에 의거해 납부해야 한다.
- 2) 선관위 검토결과, 등록기한내 후보예정자가 제출한 제반서류 일체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후보등록을 완료하며, 하자가 있는 경우 서류수령시 선납부금 \$5,000 을 포함한 제반서류와 등록비\$45,000 은 당사자에게 즉각 반환한다.
- 3) 하자없이 등록이 완료된 후보의 납부된 입후보등록비 \$50,000 과 추가로 납부된 선거비용 \$80,000 은 선거의 결과에 상관없이 일체반환되지 않는다.
- 4) 자진사퇴, 또는 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인한 자격박탈 등의 중도탈락자에게는 입후보등록비나 선거비용의 구분과 상관없이 납부된 금액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다.
- 5) 후보등록마감결과 1인이 등록한 경우, 입후보등록비 \$50,000 은 선관위에서 선거준비관련 지출된 내역을 정산하고, 남은잔액은 감사의 확인을 거쳐 당선일 기준 10일 이내에 회계보고서와 함께 차기 한인회에 인계한다.

후보등록마감결과 2인 이상이 등록한 경우, 각각의 입후보등록비 \$50,000 은 후보등록마감일로부터 2일내 한인회로 인계하며, 한인회는 인계된 자금을 별도 관리하여 차기 한인회에 재인계한다.

선거비용 \$80,000 은 선거비용으로 사용되며, 선거비용 초과시, 회계보고서와 함께 예상 초과분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여 한인회 운영위원회에 신청하며, 운영위원회는 신청 접수후 48시간 내 즉각적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를 이사회에 상정하며, 이사회는 정관 제 6 조 3 항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여 별도 관리되고 있는 회장후보 등록비에 한하는 지출을 결의하고 선관위에 지급한다.

- 6) 경선이 치러진 경우 선거비용을 정산하고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사의 확인을 거쳐, 남은 잔액 일체를 당선일 기준 20일 이내에 회계보고서와 함께 차기 한인회에 인계한다.
- 7) 후보자는 선거과정 및 선거결과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 그리고 한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소송이 발생한 경우,
 - a) 소송은 당선자와 탈락자 또는, 중도탈락자간의 문제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 한인회는 소송에 관한 책임이 없다.
 - b) 소송으로 인한 모든 법적비용의 책임은 패소자에게 있다.
 - c) 패소판결 전까지 당선자, 선관위, 선거관리위원 또는 한인회로 청구된 모든 법정비용은 차기한인회가 감당한다.

제 6 조 [투표인 자격 및 기호추첨]

- 1) Los Angeles 카운티에 거주증명이 되는 18세 이상의 한인은 정회원으로 선거권을 가지나, 유권자등록 절차가 완료된 자에 한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 2) 유권자등록은 선관위가 공지한 기간과 등록방법에 따라 등록한다.
- 3) 유권자등록을 마친 선거인은 원칙적으로 우편투표를 해야하나, 기한내 우편투표 발송이 어려운 경우 현장투표소에 투표할 수 있다.
- 4) 후보등록 마감 결과 후보가 2명 이상인 경우, 선관위는 등록마감 3일 내에, 각 후보자가 기호번호를 추첨할 수 있도록 한다.

제 7 조 [투표방법과 투표자격 확인]

- 1) 선관위에서 공지한 일정에 따라 우편투표 또는, 현장투표 2가지 방법으로 투표한다.
- 2) 현장투표시 자격확인인 LA 카운티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DMV 발행 운전면허증, DMV 발행 아이디, 총영사관발행 아이디 중 하나로 한다.
- 3) 만약 아이디와 실제거주지가 다른경우, 본인 이름과 일치하는 고지서(Utility Bill 등)등의 추가서류로 자격여부를 확인한다.

제 8 조 [기표방식]

- 1) 우편투표의 투표용지에 기호순으로 기재된 입후보자 성명란 옆에 “O” 로 표기한 후, 반송용 봉투에 넣어 우편함에 넣는다.
- 2) 우편투표의 투표용지는 선관위의 고유인장으로 확인된 것만 유효하다.
- 3) 우편투표를 발송할 시점이 늦은경우, 투표당일 현장투표소의 기표함에 우편투표를 넣을 수 있다.
- 4) 현장투표소에서의 투표는 기표소 안에 준비된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해서 전자투표로 한다.

제 9 조 [선관위 공고사항]

선관위는 선거관련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1) 선거실시 공고 : 선거일정 및 후보자격, 투표방법 등
- 2) 결산내역공고는 선관위 해산 기자회견으로 대체한다.

제 10 조 [입후보자 홍보활동]

- 1) 선관위는 입후보자 등록 이후부터 투표일전까지 선거관련 공고 1회를 실시한다.
- 2) 후보자는 기호번호가 부여된 이후부터 투표일 전까지 후보자의 정책, 공약 등을 알리기 위하여 개별적인 홍보광고를 할 수 있다.
- 3) 후보자의 개별적인 홍보광고는 신문, 라디오, TV 등의 미디어를 포함하여 인쇄물, 인터넷 및 이메일, 소셜미디어(SNS)를 포함한다.
- 4) 포스터등 인쇄물 광고는 선관위에서 정한 규격을 따른다.
- 5) 후보자의 광고내용 중 상대후보 또는 선관위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인신공격, 중상모략등의 내용으로 선거분위기를 혼탁, 악화시킨 경우, 선관위는 의결을 거쳐 단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경고하며, 또 다시 2회째 서면경고를 받는 즉시, 해당후보의 자격박탈 및 당선을 무효화 한다.

제 11 조 [입후보자 선거운동]

선거에서 발생될 수 있는 혼잡한 혼란을 예방하고 소모적이고 퇴폐적인 선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관위가 통제한다.

- 1)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들의 선거운동은 입후보등록후 즉시 선거법에 적용되며, 25 인 이상의 모임에 참석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선관위에 이를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단체, 친목회, 동창회, 노인아파트 개별방문, 기타 유사한 모든 모임)

제 12 조 [투표소 참관인]

- 1) 각 후보자는 후보자 본인을 제외한 2 인을 기표소에 참관인으로 둘 수 있으며, 선관위가 정한 참관인등록일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 2) 참관인은 선거인, 투표용지, 본인확인, 자격확인, 투표과정에 참관하며, 선관위 및 선거요원의 선거진행에 협력한다.
- 3) 참관인은 선거인에 인사를 건네는 등 선거진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언사와 행동을 할 수 없고, 선관위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선관위 의결에 따라 퇴장되며, 이 경우 대체 참관인을 참여시킬 수 없다.
- 4) 참관인을 제외한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또는 선관위가 공지한 시간동안 투표장에 절대 입장할 수 없다.

제 13 조 현장투표소의 장소와 운영시간, 투표함 설치 위치 및 개수는 선관위가 정한다.

제 14 조 [투표함 관리 및 개표과정]

- 1) 현장투표소의 투표함은 투표종료 즉시 선관위원과 참관인이 함께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봉합, 날인한 후 지정된 장소로 함께 운반한다.
- 2) 선관위는 우편투표기간 접수되는 우편투표의 일일현황을 참관인에 공개하고, 안전이 보장되는 별도의 시건장치에 보관하며, 투표일 현장투표 종료 직후, 선관위원과 참관인이 함께 지정된 장소로 함께 운반한다.
- 3) 우편투표는 투표일 당일소인이 날인되었고 개표이후 3 일내에 도착하는 우편투표까지만 인정하며, 참관인의 참관하에 선관위원이 개표하여, 투표결과에 합산한다.
- 4) 개표는 투표종료 직후, 3 시간내에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천재지변, 정전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개표준비가 미진한 경우, 선관위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 5)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개표장소에는 선거관리위원, 선거보조요원, 각 참관인, 경찰, 경비인력만 출입할 수 있으며, 언론사의 경우 LAPD 또는 LA 카운티 웨리프에서 발행한 기자신분증을 소지한 언론사에 한한다.

제 15 조 [후보자격 탈락 및 벌칙 사항]

선관위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했을시, 후보자격 탈락 및 당선을 무효화 한다.

- 1) 단독 입후보하기 위해 타 후보자를 실질적이고 상당한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매수한 경우;
- 2) 선거 기간 중 타 후보에 대한 허위 선전, 인신공격, 중상모략으로 선거 분위기를 혼탁, 악화시켰다는 선관위의 판정으로 2회 서면경고를 받을 시;
- 3) 금품 수수, 음식물제공, 퇴폐, 부정선거로 판정될 시;
- 4) 후보자나 참관인의 투표 및 개표 선거업무 방해 시;
- 5) 선관위에 제출된 제반 서류에 기재된 사항의 중대한 허위 및 위반 사항 발견시 ;
- 5) 선관위로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문서위조 사실이 밝혀질 경우;
- 6) 신원조회 결과 선거관리규정 제 4 조에 의거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시;
- 7) 입후보자 또는 그의 선거운동원이 후보등록 직후부터 후보 자격으로 선관위의 승인 없이 25인 이상의 형태의 모임에 참석하거나, 투표권자에게 금품 및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혹은 선관위에서 정하는 선거운동 방식을 위반한 경우 (별지#2 참조)
- 8) 특정 입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교통편을 제공한 경우;
- 9) 입후보자가 선거관리규정 제 10 조(입후보자의 홍보활동)위반 시;
- 10) 입후보자가 선거관리규정 제 11 조(입후보자 선거운동)를 위반하여 선관위로부터 2번 서면경고를 받을 시;
- 11)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 제 3자의 유권자등록을 대리하거나, 투표용지 기입을 대리한 사실이 적발될 시;
- 12) 벌칙사항의 제재로 인해 후보자탈락 및 당선무효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후보의 입후보등록비 5 만불과 선거비용 10 만불은 일체 반환되지 아니한다.(별지#3 참조)
- 13) 선관위는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의 부정선거운동 행위를 고발 받았을 경우, 그 부정행위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육하원칙에 맞게 선관위에 직접 제출해야 접수가 된다. 그러나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을 통한 신고는 인정하지 않는다.
- 14) 이외에도 일반선거에 비해 부정선거로 판단되는 경우 선관위 의결에 따른다.
- 15) 이중투표 적발 시 선관위에서는 해당 투표를 무효처리하며, \$10,000 (일만불)의 벌금을 해당 투표자에게 부과한다.
- 16) 선관위는 제 15 조 1~15 항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 선거관리위원장은 즉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위반사항을 통지하며, 서면통지 전달 후 24 시간 안에 당사자의 직접대면을 통하여 사유를 파악하며, 심각한 과실이 인정될 때 제 18 조의 결의에 따라 벌칙을 결정한다.
서면통지 전달은 직접전달, 우편, Fax, E-mail, Electronic Communication (*SNS)등 유사한 보편적방법을 망라한다.

제 16 조 [당선 및 재선거]

- 1) 현장투표와 우편투표 개표결과 최다득표자를 당선으로 하며 동수일 경우, 다시 재검하며, 또 동수인 경우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 2) 등록마감일까지 입후보등록자가 1 인인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 3) 등록마감일까지 후보자 등록이 없을 시에는 30 일내에 재등록을 실시하며, 그 이후에도 등록이 없을 시에는 현 한인회 이사회에서 이에 대하여 결정한다.
- 4) 입후보자가 2 인인 경우, 한 후보자가 자격상실 및 탈락하면 남은 후보는 자동으로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 5) 입후보자가 3 인 이상일 경우, 한 후보자가 자격상실 및 탈락되더라도 남은 후보는 선거를 실시한다.
- 6) 입후보자 모두 자격 상실 및 탈락한 경우, 선관위는 15 일 이내에 재등록을 받아 새 후보자로 재선거를 실시하며, 자격이 상실된 입후보자는 재입후보 할 수 없다.
- 7) 선관위는 상기 6 항에 따른 재등록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관위는 자동 해체되며, 해체일로부터 2 일 이내, 제 5 조 2 항에 따른 회계보고와 별도로, 선거비용 잔액을 한인회에 인계하며, 이후 모든 결정은 한인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17 조 [유권자등록 및 우편투표]

- 1)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관위가 공지한 기간내에 유권자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 2) 선관위가 공지한 등록기간 이후의 등록은 인정하지 않는다.
- 3) 유권자등록 및 우편투표 용지 기입은 반드시 해당 선거인 본인이 해야하며, 제 3 자가 대리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해당투표를 무효화한다.
- 4) 유권자등록은 등록기간 동안 본인이 선관위의 이메일, 팩스, 우편의 방법으로 LA 카운티 거주와 18 세 이상임을 증명하는 CA 주 DMV 발행 운전면허증 & ID, 총영사관 발행 ID 중 하나의 사본을 선관위에 보내야 한다.

단, ID 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경우, 본인이름과 일치하는 고지서 (Utility Bill 등)등의 추가서류도 같이 보내야 등록이 완료된다.

제 18 조 [선관위 의결]

- 1) 모든 선관위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
- 2)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 회의의 개최를 위해 긴급소지권을 갖으며, 회의 소집통보는 전화,이메일,팩스, Electronic Communication 을 포함한다.
- 3) 선관위원이 2 회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연속 출석하지 않는 경우, 위원장은 선관위 의결을 거쳐 위원교체를 실행할 수 있다. 새로운 위원은 한인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4) 선거실무를 위한 세부별지,서약서 등은 선관위 의결을 거쳐 보완 및

수정할 수 있으며, 상위규정인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는 내용들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 19 조[후보 및 예정자의 기금모금행사]

- 1) 후보 및 입후보예정자들은 후원금 모금을 위해 자유로운 기금모금행사를 할 수 있으며, 행사기간은 서류배부일로부터 후보등록 시작 3일전까지로 한정한다.
- 2) 후보등록 이후의 기금모금행사는 불법이며, 입후보자격을 박탈한다.
- 3) 기금모금 성격의 행사로 모금되는 금액들은 반드시 그 목적에 맞게 후보 등록비 및 선거비용으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체크에,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로 기재하여야하고, 메모란에 반드시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을 적어야 한다.
- 4) 후원모금액은 개인및비즈니스 포함 1가정당 최대\$1,500 을 초과할 수 없다.
- 5) 후원모금액은 체크(Check)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선관위에서 정한 후원확인서(Donation Form)와 함께 받아야 한다.
- 6) 온라인 방식(Venmo, Paypal 등)의 후원의 경우, 기부자 이름과 입출금 내역이 확인되는 명세서(Statement)가 출력되는 플랫폼만 인정한다.
- 7) 모든 후원행사가 종료되면, 후원체크(Check)는 후보등록일에 제반서류와 함께 선관위에 제출하며, 온라인 후원금액은 후보등록일 1일전 까지 한인회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 8) 한인회에서는 이러한 성격의 기금이 접수되는 즉시 해당되는 인물의 명목으로 별도계좌를 열어, 그 목적으로만 출납이 이뤄지도록 한다.
- 9) 한인회에서는 후보예정자의 후원금을 송금받는 즉시, 선관위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며, 후보등록이후 개설되는 선관위 계좌에 해당금액을 이체한다.
- 10) 후원내역중 기부자의 신상을 파악할 수 없거나, 출처가 불분명 또는 후원확인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는 인정하지 않는다.
- 11) 제 19 조를 위반하는 경우, 입후보자격을 박탈한다.

제 20 조 [유권해석]

선거관리위원회와 입후보자간의 이견이 발생한 경우,선관위원 과반수 이상의 해석에 따른다.

제 21 조 본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 원칙인 본 한인회 정관 제 6 장 2 조에 따라 심의해 결정한다.

제 22 조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 날로부터 즉시 효력을 갖는다.

2024 년 10 월 16 일

이전개정일

- : 2011 년 10 월 5 일
- : 2013 년 9 월 18 일
- : 2016 년 1 월 15 일
- : 2016 년 3 월 9 일
- : 2018 년 3 월 21 일
- : 2020 년 10 월 15 일
- : 2022 년 10 월 6 일
- : 2024 년 10 월 16 일

로스앤젤레스한인회 정관

BYLAWS OF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로스앤젤레스한인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로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LA 한인 동포사회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한인동포의 권익옹호와 동포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고, 한. 미간의 문화교류와 우호증진을 도모하며 나아가 타민족 공동체와의 교류 및 이해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인 공동체 내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건강, 고용, 연장자, 차세대 복지 및 문화 발전을 위한 자체적 또는 타민족, 타민족 비영리단체(미연방정부 및 주정부에 비영리 단체로 등록된)와 공동 협력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각종 건설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제 4 조: 관할

본회는 Los Angeles County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며, 미 연방법 및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한 비영리단체로 한다.

제 5 조: 주소지

본회는 981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06 한인타운 (Korea Town)에 둔다.

제 2 장 조직 및 회원

제 1 조 : 조직

로스앤젤레스한인회는 다음의 기구들로 구성된다.

1. 이사회, 회장단, 이사장단, 사무국으로 조직을 구성한다.
2. 회장단은 회장, 제 1 수석부회장, 제 2 수석부회장, 8인 이내의 부회장으로 평이사중에서 구성하며, 회장단은 고문변호사 및 자문단을 두어 업무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3. 이사회는 회장단을 포함하여 이사장, 수석부이사장, 부이사장, 평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단은 이사장과 수석부이사장, 부이사장으로 구성하고, 이사회 산하에 업무 분과별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4.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직원들로 구성되며, 사무국장 및 일반 직원들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5. 재무, 기부, 홍보, 사무의 각 사업부서는 본 정관 제 1 장 3 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사업부서별 부서장은 회장이 이사장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 2 조: 회원

본회는 Los Angeles County 내에 거주하는 한인으로 구성하며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한인으로서, 18 세 이상의 Los Angeles County 에 거주 증명이 되는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정회원이 아닌 자로서 타지역 거주자도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18 세 이상인 자로 한다.

제 3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 정회원은 정관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정관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다만, 준회원인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없으나 정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정회원은 본회로부터 우선적 각종 서비스를 받으며 우대회원으로 대우받는다. (단, 준회원도 동일하다)

제 3 장 임원

본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제 1 조 회장단

1. 회장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한인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회장은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식으로 선출된다. 회장 선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회장은 재임 기간 중 타 단체의 대표를 비롯하여 임원,이사등 어떠한 직책도 겸임할수 없다. 단, 자동이사로 참여하는 한미동포재단은 예외로 하며, 한인사회 공익을 위한 지역정부기관의 참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회장 입후보 자격은 선거관리규정의 자격조항을 따르며, 선출된 회장의 재임기간 중 자격유지 요건도 동일 규정과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또, 회장은 재임기간 품위를 지키고 본회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켜서는 안되며, 회장으로서는 직무수행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직무수행의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키는 등 품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이사회로부터 직무정지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2. 수석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그 수는 2인 이내로 한다. 회장의 부재 시 이사장과 협의하여 업무를 대리하며 회장에게 보고한다.
회장의 공석시에는 제1수석부회장은 제3장 6조에 의거 회장 공석 사유일로부터 20일 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회장이 결정 될 때까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그 수는 8인 이내로 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가결을 거쳐 상근직을 둘 수 있다.

4. 회장은 수석부회장, 부회장, 재무이사(Treasurer)등을 추천하여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제2조 이사장단

1. 이사장: 이사회를 대표하며 이사회 의장이 된다. 회장과 함께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한다.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회장단과 사무국 운영 전반을 지도 및 감독한다. 또, 회장단과 사무국에 재정 및 회계 집행 등 운영과 관련된 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회장과 회장단이 신규사업을 집행할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장과 사무국은 이를 따라야 한다.
또, 이사장은 회장이 재임기간 본회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회장으로서의 책임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이사회에 회장에 대한 징계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2. 부이사장: 이사장을 보좌하며 수석부이사장 2인 이내, 부이사장 8인 이내로 구성하며 이사장의 공석 시, 제1수석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 3 조 회장 및 임원의 자격

회장 및 임원자격은 다음 호와 같이 규정한다.

1. 본회의 임원은 정회원으로서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미국 및 한국의 관련법규에 의하여 금고 이상의 형 선고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2. 회장은 후보등록 시작일 기준 10년내 본 한인회는 물론 미국 캘리포니아주 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에서 이사, 임원, 회장 등으로 재직하던 중 자격박탈, 제명퇴출, 직무정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로 한다.
3. 회장은 위의 자격요건 외에 후보등록시작일 기준 10년 이상 Los Angeles 카운티에 거주한 자이어야 하며,
 - 1) 최근 10년내 본 한인회 이사 또는 임원으로 2년 이상 봉사한 자로 한다.
또는,
 - 2) 미국 캘리포니아주 내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활동

근거지를 둔 단체에서 후보등록시작일 기준 최근 7년내 3년 이상 임원 (회장, 부회장, 이사장, 부이사장)으로 봉사활동 한 자로 한다.

위의 비영리단체라 함은 후보등록시작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캘리포니아주 비영리단체법에서 규정한 절차들을 준수 했어야 하며, IRS 에 Required Annual Filing(990 or 990 Ez)절차를 제대로 마친 결과, 하자가 없는 단체에 한한다.

- 3) 본회 관할지역인 LA 카운티 내에서 한인회의 명칭을 사용하는 타 단체에서 임원,이사, 고문 및 위원장 등 어떠한 직책이라도 맡은 적이 없는 자로 한다.
- 4) 성범죄(성폭행,성추행등), 마약범죄,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윤리에 반하는 범죄경력자, 한인사회 공익에 반하는 단체 가담자, 조직에 심각한 분란의 원인제공자 또는 법적소송의 원인제공자가 아닌 자로 한다.

제 4 조: 임원의 임명

1. 임원은 회장, 제 1 수석부회장(Secretary), 제 2 수석부회장, 다수의 부회장, 이사장, 수석부이사장, 다수의 부이사장 등과 재무관리이사(Treasurer)로 한다.
2. 본회의 이사장은 컷이사회 또는 연차회의에서 선출한다.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다수는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인준받는다.
3. 이사장은 수석부이사장, 부이사장을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인준 받는다.
4. 이사장은 제 4 장 2 조에 명시한 [이사의자격]외에 사회적 명망, 한인사회 이력등 회장과 함께 한인회를 대표하는 이사장으로서의 소양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이사장의 사회적 명망, 한인사회 이력등의 요건은 지역에 국한하지 않는다.

제 5 조: 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아래의 각 항과 같다.

1. 본회 회장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현직 회장에 한하여 단 한번 재출마 및 연임할 수 있다. 전직회장은 입후보 할 수 없다. 회장은 무보수 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2. 본회 이사장의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3.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6 조: 임원의 보선

본회 회장 및 이사장의 공석 시에는 아래 항에 의거하여 다음의 임원이 각각의 직무를 대행한다.

1. 회장의 공석시에는 제 1 수석부회장이 차기 회장 선출까지 직무를 대행하며, 다음 조항에 따라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 1) 회장의 임기가 공석일로부터 6개월내 종료되는 경우, 제 1 수석부회장과 제 2 수석부회장중 이사회 참석인원 2/3 이상을 득한자가 잔여임기를 인계한다. 단, 승계된 잔여임기는 회장의 정식임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회장의 임기가 공석일로부터 6개월이상 남은 경우, 선거규정에 따른 선거절차를 통해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2. 이사장, 임원의 결원 또는 공석시에는 상기 제 3 장 4 조[임원의임명]과 제 6 장 2 조 [의결]에 의거하여 임원을 선출한다.

제 4 장 이사회

제 1 조: 이사회의 구성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 19명, 최대 50명 이내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제 2 조: 이사의 자격

본회의 이사는 본회의 정회원으로,

1.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로서 미국 및 한국 관련법규에 의하여 선출일 기준 최근 7년내에 금고이상의 형 선고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2. 본회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이사는 소정의 이사회비를 임기시작과 동시에 완납하여야 하며, 별도의 기금모금에 참여하여야 한다.

3. 연임하는 이사의 경우, 신임 이사회로부터 재신임을 받은 자에 한하며, 소정의 이사회비를 임기시작과 동시에 완납하여야 한다.

제 3 조: 위원회

본회 이사회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이사회 소관 위원회로서 두어 운영한다. 다만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추가로 특별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위원회는 각 부서의 업무활동을 심의, 감시하며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논의된 안건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2. 각 위원회는 아래와 같으며,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조정 할수 있다.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로 임명된다.
 - 1) 동포단체위원회;
 - 2) 차세대위원회;
 - 3) 보건,공공안전위원회;
 - 4) 대외협력위원회;
 - 5) 사회복지위원회;
 - 6) 문화/체육위원회;
 - 7) 홍보위원회;
 - 8) 동포, 경제, 상업 협력위원회 ;
 - 9) 재난대책준비위원회;
 - 10) 특별위원회;
3. 임명된 각 위원장은 소속 위원회의 사업내역, 사업목적, 사업계획 및 실행안을 작성, 회장단의 동의를 얻어 매년 연차회의 또는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실행한다.
4.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의 재량에 맡긴다.

제 4 조: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회장단과 협력관계를 통해 본회의 사업목적을 달성을 위해 회장단을

지도, 감독할 수 있다.

1. 회장단과 사무국으로부터 본회의 사업 진행과 회계 및 재정에 대해 매분기 서면 및 구두보고를 받고,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분기별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는 이사장단이 대신할 수 있다.
2. 본회의 사업목적 달성에 반하거나 본회의 명예와 위상을 실추시킨 뚜렷한 징계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는 회장을 포함한 회장단 및 사무총장(사무국장)에 대해 단기 1주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일정기간 직무정지 징계를 내리거나 중대 징계 사유인 경우 면직 등의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3. 징계안 발의는 이사장이 할 수 있으며, 재적이사 1/3 이상의 재청을 통해서도 징계안을 이사회에 발의할 수 있다.
4. 징계안 의결은 일정기간 직무정지의 경우 출석 이사 과반수의 동의와 재청으로 가결되며, 면직 징계는 재적이사 2/3 이상의 동의와 재청을 통해 가결된다.
5. 회장단이 상당한 예산지출이 예상되는 사업을 진행하려 할 경우, 이사회는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와 설명을 회장에 요구할 수 있으며, 중요 사안인 경우, 이사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회장단에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의 동의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제 5 장 자문회의

제 1 조: 자문회의

본회는 회장 자문기관으로 상설자문회의 제도를 둘 수 있으며, 자문회의 의장은 본회 회장이 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 2 조: 자문회의의 구성

자문회의의 구성원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제 6 장 2 조에 의하여 의결된 자로 한다.

제 3 조: 자문회의의 역할

자문회의는 한인회의 신규사업 및 한인사회 현안에 대해 회장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회장의 요청에 따라 관련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제 6 장 회 의

제 1 조: 회의

본회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회의를 갖는다.

1. 연차회의

1)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 기간 중 회장이 소집하며, 이사장 선출 및 임원을 인준 받는다.

2)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이사회비 책정 등 상정된 주요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다만 위의 안건이 추가심의를 요할 경우, 다음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2. 정기이사회:

정기이사회는 매 2개월로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에 이사장이 소집하여 개최하고, 날짜와 시간은 회장과 이사장의 협의에 의해 이사들에게 30일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 10일전에 통보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된 중요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통보는 우편, E-MAIL, FAX 또는, 이에 상응하는 ELECTRONIC COMMUNICATION(*SNS)의 방법으로 한다.

3. 임시이사회:

임시 이사회의는 회장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총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하며 일시, 장소, 안건을 최소 3일전에 이사들에게 통보한다. 통보는 우편, E-MAIL, FAX 또는, 이에 상응하는 ELECTRONIC COMMUNICATION(*SNS)의 방법으로 한다.

4. 운영위원회의:

1) 운영위원회의는 임원회의로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한인회 각종 행정업무, 재정관리, 사무국 직원 임면 등 한인회 운영을 총괄한다. 토의된 안건중 이사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또는 부재시 부위원장이 이사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구한다.

2) 운영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임원들로서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장, 수석부이사장, 부이사장, 재무이사, 감사로 하며, 회장은 필요에 따라 구성인원을 추가할 수 있다.

3) 회장이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 1 수석부회장이 된다. 위원장 부재시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제 2 조: 의결

- 1) 본회의 정관에 명기한 모든 회의는 총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모든 결의는 참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 2) 회의 성원 또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족수가 부족한 경우, 회의 또는 의사결정은 성립되지 않으며, 회의통지 방법에 따라 재소집되어야 한다.
- 3) 회의성원과 의사결정에 서면등의 위임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천재지변이나 출장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화상회의(Zoom, Skype 등)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단, 정관개정과 회장 및 이사장 유고시 선출은 성원이사 2/3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 7 장 선거 및 선출

제 1 조 : 회장의 선출

본회의 대표인 회장은 별도로 정한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선출한다.

제 2 조 :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영입

이사장과 임원은 정관에 의하여 연차회의에서 선출한다. 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관 제 6 장 2 조[의결]에 따라 선출되며, 회장이 임명한다.

제 3 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본회의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은 회장에게 위임하며, 3 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한시적인 특별위원회를 제외한 위원장은 임명 후 60 일 이내에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위원장은 회장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의 가결 없이 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제 4 조: 감사의 선출

본회는 본회의 이사로 구성된 내부 전문성 있는 감사 2 명을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 5 조: 취임식

본회 회장 및 이사선출자는 당해 연도에 취임식을 갖는다.

제 8 장 인수인계

제 1 조

신임 당선확정자는 인수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2 조

인수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한다.

제 3 조

인수위원회는 당선일로부터 30 일내, 차기 이사회망자의 신청을 받아 차기 이사진을 구성한다.

제 4 조

차기 이사진은 해당년도 1 월 1 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제 5 조

인수위원회는 현 한인회의 임기종료 1 개월 전 기준 제반사업 및 업무, 그리고 재정(Cash Base 기준)등의 현황을 인수인계 받는다.

제 6 조

현 한인회 제반사업 및 업무, 그리고 재정 등의 인수인계가 충실히 이행되어야 하며, 현 한인회는 인수위원회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현 한인회의 재정부족분이 있는 경우, 현 한인회가 결손충당의 의무가 있다.

제 9 장 재정

제 1 조: 재정

1. 본회의 이사는 소정의 이사회비를 임기 시작과 동시에 완납하여야한다.
2. 본회의 재정은 임원회비, 이사회비, 연방정부, 주정부 및 시정부 보조금, 기부금, 사업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3. 임원 및 이사회비의 감면, 면제 등의 예외적인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4. 한인회 지출중 직원월급등 일상경비를 제외한 \$ 2,000 불 이상의 결제는 반드시 회장, 재무이사 2 명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5. 매 이사회 마다 해당기간의 재정상황을 보고한다.

제 2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 3 조: 감사

감사는 회계를 자료로 감사하여 그 결과를 최소한 년 1 회 정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또한 본회의 감사는 임기가 끝나는 시점 마지막 이사회에서 Cash base 로 결산보고를 한다. 그리고 60 일 이내에 외부 공인회계사의 회계보고와 의견서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회 보고 후 30 일 이내에 한인회 웹사이트를 통해 이를 공고하도록 한다.

제 10 장 분쟁 중재 위원회

제 1 조: 분쟁 중재 위원회의 설치

본회는 LA County 내의 한인과 관련된 분쟁을 중재할 목적으로 분쟁 중재 위원회를 둔다.

제 2 조: 구성

분쟁 중재 위원은 한인회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위촉된 9 인 이내로 구성하되 분쟁의 성격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 될 때는 관련 협회 혹은 단체의 대표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 11 장 상벌 및 면책

제 1 조: 포상

본회는 이사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결의로 본회 회원이나 본회 후원자에 대한 포상을 결정할 수 있다.

제 2 조: 제명

1. 본회의 회장을 제외한 임원 및 이사가 정관 및 내규에 규정된 의무를 상당 기간 이행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서면과 직접 대면을 통하여 사유를 파악하며, 제명에 이르는 심각한 과실이 인정될 때, 운영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회는 이사회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 또는 직무정지 할 수 있다. 단, 회장의 경우에는 재적이사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 또는 직무정지 시킬 수 있다.
2. 1년 동안 정기이사회에 2회 이상 또는 임시이사회 4회 이상 무단불참 하는 경우도 정관 및 내규에 규정된 의무를 태만한 사유로 동 11 장 2 조 1 항에 의하여 제명 또는 직무정지 할 수 있다.
3. 임원회비 및 이사회비는 임기시작과 동시에 완납하여야 하며, 30 일이상 납부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2회 서면공고를 하며, 서면공고에 지정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이사 자격을 상실한다.
4. 임원과 이사 그리고 한인회에서 고용한 사무직원, 또는 한인회에서 업무를 의뢰한 개인이 한인회 업무를 수행하던 중 어느 개인이나 회사로부터 법적소송을 당하는 경우, 개인적인 책임은 면제되며, 한인회는 이를 대비하여 최소 1 백만불 이상의 D&O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제 12 장 부칙

제 1 조: 규정의 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르며, 제 6 장 2 조의 의결에 따라 심의 결정한다.

제 2 조: 시행 세칙 및 부칙

한인회 정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행 세칙 및 부칙을 둔다. 시행세칙 및 부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 3 조: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의 개정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은 개정위원 5인 이내로 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자로 이사회 의결로 선출하여 개정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개정안을 개정위원회 구성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사회에 상정하여 의결한다.

개정된 정관은 이사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즉각적 효력을 갖는다.

2024년 10월 16일

이전 개정일

- : 2012년 3월 2일
- : 2013년 9월 18일
- : 2015년 12월 16일
- : 2016년 3월 9일
- : 2018년 3월 21일
- : 2020년 10월 15일
- : 2022년 10월 6일
- : 2024년 10월 16일